

[問] : 自動火災探知設備에 對한 問議

저희 建物은 自動火災探知設備 對象建物로 非常電源用으로 自家發電機를 具備하고 있는데, 貴協會의 安全點檢結果通報에 依하면, 自家發電機는 自動火災探知設備의 非常電源으로 認定되지 않는다는데 그 理由는 무엇입니까? (住所 : 종로구 안국동 285 姓名 : 엄대웅)

[答] : 自動火災探知設備란 스스로 火災를 感知하여 알려주는 警報設備의 一種입니다.

그 主目的은 火災를 早期에 發見하여 消火는 勿論, 貴重한 人命被害를 막기 위하여 安全하게 待避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常用電源이 停電되어도 非常電源으로서 無停電狀態로 電氣가 供給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發電機는 起動한 뒤 빠른것은 數十秒, 늦은것은 數分後에 規定電壓, 規定周波數에 到達하여 負荷를 投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發電機는 回轉器機이므로 故障를 일으키는 確率이 많아서 無停電狀態에서도 電氣를 供給받아야하는 自動火災探知設備의 非常電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自動火災探知設備의 非常電源으로서는 蓄電池設備, 또는 非常電源轉用受電設備만이 許容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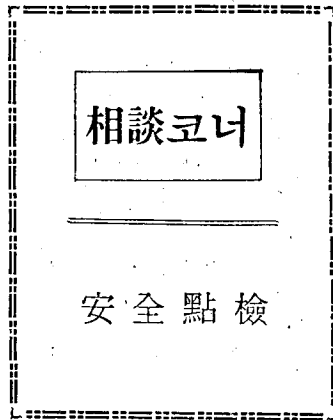
[問] : 非常「콘센트」에 對한 用途, 使用 電線 및 「콘센트」規格에 關하여 알고자 합니다(住所 : 중구 명동, 姓名 : 이경순)

[答] : 問議하신 事項에 對하여 하나하나 答해 드리겠습니다.

① 非常「콘센트」의 用途는 消火活動上 必要한 器具, 또는 破壞用器具에 電源을 供給하기 위한것입니다.

② 非常「콘센트」에 使用하는 電線은 熱에 견디는 힘이 강한 耐熱電線을 使用하거나 또는 耐熱電線과 同等以上の 絶緣耐力이 있는 材料로 被覆한 電線을 使用하여야 합니다.

만약 耐熱性이 弱한 一般電線을



使用하면, 火災時에 電線이 熔融되어 合線 또는 短絡되거나 燒損되어 非常「콘센트」를 設置하는 本來의 目的에 符合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③ 非常「콘센트」는 3相 200V, 30A 以上과 單相 100V, 15A 以上을 함께 設置하여야 하되 埋込式 保護函內에 設置하여야 합니다.

[問] : 貴協會의 防火安全點檢을 받고 改修要望事項을 通報받았습니

다. 그 事項中에서 電熱器 및 一般照明用에 使用하는 「비닐·코오드」를 다른 規定電線과 代置하여 使用하여야 安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電線을 使用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住所 : 중구 인현동, 姓名 : 서경희)

[答] : 電氣는 우리들의 生活을 아주 便利하게 하는 것으로서 한 나라의 文化發展의 尺度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電氣는 使用을 잘못하면 火災를 가져다 주는 危險要素이기도 합니다.

現在 우리가 주로 많이 使用하고 있는 「비닐·코오드」에는 지름 0.18mm의 素線50 가닥 「코오드」와 30가닥 「코오드」 등이 있습니다.

「비닐」電線은 熱에 아주 弱하기 때문에 火災의 危險性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白熱電球나 電氣난로等に 「비닐·코오드」를 使用할 경우에는 熱이 蓄積하여 「비닐」被覆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 結果 合線·短絡等の 現象으로 電氣火災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電氣設備技術基準令 第204條에는 屋內低壓電球線(400V以下)에 斷面積 0.75mm 以上の 고무「코오드」, 고무「캡·타이어·코오드」,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同等以上の 絶緣效果가 있는 電線을 使用하여야 합니다.

〔問〕 本人의 建物은 銀行에 擔保되어 火災保險에 加入되어 있는데도 다시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에 加入하였읍니다. 罹災時에 支給될 保險金에 대해 說明하여 주십시오.

〔答〕 貴下의 경우 建物損害에 대한 火災保險金과 人命被害에 대한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金의 두 가지 保險金이 支給됩니다. 이를 分說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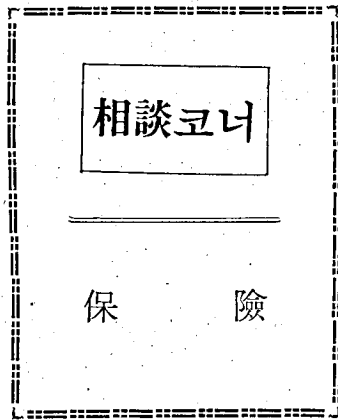
첫째(火災保險金) — 火災로 인하여 契約上의 一定한 經濟的 失을 損 입었을 때 被保險者에게 支給되는 補償金을 말하며 貴下의 경우와 같이 同一한 目的物에 두 종류의 保險契約를 締結하였을 때는 保險用語上 이를 重複保險이라 칭하고 重複契約에 對한 保險金支給方法을 商法第672條 第1項에서는 “重複保險의 경우 이른바 同時契約인가 異時契約인가를 묻지 않고 그 保險金額의 總額이 保險價額을 超過한 때에는 保險者는 各者의 保險金額을 限度로 補償할 責任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各 保險者는 各者의 保險金額을 限度로 連帶責任을 진다”고 規定하였고, 또한 火災保險普通約款 第19條에도 그 補償方法을 規定하였으므로 罹災時에는 契約의 先後에 關係없이 契約別 保險金額比率에 따라 貴下에게도 直接保險金이 支給될 것입니다.

※ 契約別 保險金 按分方式은  

$$\text{總保險金} \times \frac{\text{契約別 保險金額}}{\text{總保險金額}}$$
(但 超過된 保險金額은 控除

함)

火災保險金을 補償받을 時 特別의 하실 點은 商法 第670條, 同 671條 및 676條 規定과 約款 第14條, 同 17條 및 同 18條에 規定한 바와같이 比例補償原則에 依據, 損害를 補償하므로 超過保險의 경우는 그 超過된 保險金額만을 無效로 하고 實損害額 全部를 補償하던 하지만, 一部保險 즉 保險金額이 保險價額에 未達한 경우는 損害額의 一部만을 補償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保險價額 400萬원의 建物을 保險金額 200萬원에 付保되었을 경우



罹災가 發生하여 그 建物이 全損되었을 때에는 保險金額 全額인 200萬원만 補償받게 됩니다.

그 損害가 一部에 머물러 100萬원의 損害가 發生한 경우라면 比例補償方式 즉 實損害額 100萬원에 保險價額 400萬원을 分母로 하고 保險金額 200萬원을 分子로 하여 算出한 比率을 乘하여 얻은 保險金  $(1,000,000 \times \frac{2,000,000}{4,000,000} = 500,000)$ 의 計算方式에 의하여 얻은 50萬원

이 支給됩니다.

이와 같은 一部保險物件의 罹災에는 被保險者의 理解不足으로 因하여 不平을 表示할 때가 많으므로 保險加入時는 加급적 現時價에 準하는 金額을 付保하여 差에 發生할 수도 있는 災難에 對備하는 것이 最上의 道입니다.

※ 損害補償金の 計算方式은 :

$$\text{保險金} = \text{損害額} \times \frac{\text{保險金額}}{\text{保險價額}}$$

(초과되었을 때는 超過額空除)

둘째(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金) — 火災로 因하여 他人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 第4條와 保險特約 第3條에 規定한 바에 따라 建物所有者가 賠償하여야 할 補償金을 保險金으로 支給하는 것을 말하며, 死亡의 경우 1人當 50萬원, 負傷의 경우 最高 40萬원을 限度로 그 症狀에 따라 等差있게 支給합니다.

이 保險은 火災保險의 경우와는 달리 總保險金에 制限이 없으며 또한 同法 第10條에 規定한 바와 같이 “이 法에 依한 保險金 請求權中 身體損害賠償 責任保險金의 請求權은 이를 押留할 수 없다”고 明示되어 있으므로, 이 保險金 請求權은 債務의 擔保로 差入할 수 없음은 勿論 第三者가 押留할 수도 없고 오로지 被害者에 對한 損害賠償金으로서 貴下가 支給받게 될 뿐입니다.

業務部 配分課長 李東潤